



약식 시장접근 중지 공지에 대한 수정 공지

CME-18-0856
발효일: 2018년 6월 13일

문서번호: [CME-18-0856](#)

회원여부/비회원: 하나금융투자

CME 규정: **413.약식 접근 중지 조치 (일부)**

413.A. 접근 중지 권한

최고규제책임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거래소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선의로 판단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어떤 당사자의 CME 그룹의 일부 또는 모든 시장에 대한 접근 중지, 2) 어떤 당사자의 Globex 플랫폼에 접근 중지, 3) CME 그룹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여타 전자거래 또는 청산 플랫폼에 대한 어떤 당사자의 접근 중지, 또는 4) CME 그룹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트레이딩플로어에서 회원의 즉시 퇴장.

결론: 2018년 5월 21일, CME 그룹 시장규제부(이하 “시장규제부”)는 최고규제책임자를 통해 CME Globex 전자거래플랫폼(이하 “Globex”), CME 그룹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여타 전자거래 혹은 청산플랫폼, CME 그룹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트레이딩플로어 등을 포함하여 모든 CME Group 시장에 대한 하나금융투자(이하 “하나”)의 직간접적인 접근을 즉각적으로 중지하였다. 이러한 시장접근 중지 조치로 하나 및 하나의 계좌를 통한 그 누구도 모든 CME Group 거래소 상품에 대해 모든 개인, 법인, 또는 계좌를 위한 매매, 주문 입력 및 거래 관리 및 지시가 금지되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하나측 청산회사에 보유된 미결제약정은 하나 또는 하나의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청산회사에 의한 청산이 허용되었다.

2018년 5월 21일 이후로 하나는 시장규제부에 하나의 자기매매거래에 대하여 거래소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시장접근 중지 조치: 이에 최고규제책임자는 CME Group 규정 413에 의거, 기 시장접근중지 조치를 수정하여 2018년 6월 13일 거래일의 개장시점으로부터 하나가 자기매매계정을 위하여 거래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8년 5월 21일에 취해진 여타 시장접근중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누구든 하나의 계좌를 통해 모든 CME Group 거래소 상품에 대해 모든 개인, 법인, 또는 계좌를 위한 매매, 주문 입력, 거래 관리 및 지시가 금지되는 것은 2018년 7월 20일까지(당일 포함) 유지된다. 최고규제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시장접근 중지 조치의 기한 연장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발효일: 2018년 6월 13일